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18 선고 2019가단102921(본소), 2020가단105780(반소)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 양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지영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중

변론 종결 2020. 10. 21.

판결 선고 2020. 11.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4.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9. 1. 17.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G'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시설물 및 영업권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2. 18.까지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9. 3. 5.까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9. 1. 9. 계약금 30,000,000원 중 5,000,000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인 2019. 1. 17. 나머지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18.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2. 원고 명의로 체육시설업 운영신고를 한 뒤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본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분 및 2018. 12.분 매출자료를 보여주면서 매달 순수익이 700~800만원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라운드 부풀리기, 주류 판매 허위 계상, 포스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출이 많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출은 순수한 스크린골프장으로서의 운영으로 인한 부분보다 골프 레슨으로 인한 부분이 훨씬 많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원고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사기 또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소 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월 매출을 보장한 적도 없고, 매출을 조작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유효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골프연습장의 월 매출을 보장하였다거나 포스기 조작, 주류 판매금과대계상, 라운드 부풀리기 등으로 월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착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골프레슨이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월 매출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한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월 매출 보장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3. 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